

내부(자체)감사결과

2024학년도



서울여자대학교
SEOUL WOMEN'S UNIVERSITY

■ 2024학년도 내부(자체)감사결과

구분	감사결과	후속조치
1	<p><강사료 지급규정> 제7조(강사료 지급 기준액) ②항의 2. 1급 : 4년제 대학 전임교원 및 명예교수, 박사학위소지자, 외국인강사, 석사 학위 소지자 중 강의경력 8년 이상인 자로 기재됨. 학위나 경력에 관계없이 국적에 근거한 강사료의 차등 지급내용은 규정의 정비가 필요함</p>	종결
2	<p>본교는 2학년 편입과 특례편입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, 「학사에관한 시행세칙」 제80조 제1항, 제4항의 해당 내용 삭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</p>	종결
3	<p>결강, 보강 계획서를 제출한 모든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기 내 보강이 완료 되었음을 확인하였으나,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결강 여부는 물론 보강완료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</p>	종결
4	<p>교내 및 교외장학금 유형 구분 및 지급 기준의 명확성 · 외국인 장학금 지급기준은 ‘수업료 40%~75% 차등지급’ 으로 되어 있는데, 실제 지급기준이 명기되지 않아서 지급내역 확인이 어려움. 외국인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‘수업료 40%~75% 차등지급’ 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 및 사전감면금액(실제수혜금액)을 사정대장에 함께 명기 필요함</p>	종결
5	<p>신입생 장학금 집행의 적합성 · 한나장학금은 장학금 유형에는 포함되어 있으나, 2023~2024학년도 집행 실적이 없음을 확인함. 신입생 장학금 지급 목적에 맞는 장학금 시행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근 장학금 지급실적이 없는 장학금(한나장학금 등)에 대한 유지여부 혹은 대체 검토가 필요함</p>	종결
6	<p>교내 건축물이나 집기/비품의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는 파손원인을 기재하여 사용연한이 넘거나 노후가 아닌 사고 원인의 파손은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여 불필요한 교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내부통제가 필요함</p>	종결
7	<p>교직원보수규정 제12조 제1항과 제3항이 상충되므로, 기타 사례에 대한 일할 계산 차이에 대한 일관성 확보를 위해 1항의 ‘어떠한 경우에도’ 조항 문구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함</p>	종결
8	<p>교직원보수규정 제12조(보수계산) 제3항의 2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의 월중 면직관련 월보수 전액지급 내용은 상위 참고 규정 <공무원 보수규정> 제 24조 참조하여 근속년수 변경여부 검토가 필요함</p>	종결
9	<p>가족수당 변경은 교직원의 신고서 제출로 확인하는 바, 수당지급 및 소멸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안내방법의 다양화 및 안내횟수 증가가 필요함</p>	종결